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7. 18 선고 2024가단274 판결 [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6. 13.

판 결 선 고 2024. 7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4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(단, 'C'은 'D'로 정정함).
2. 공시송달에 의한

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권순향

별지